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28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한기호・이양수・주진우

이헌승 · 김승수 · 주호영

김성원 · 김기현 · 김용태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·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,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, 현재 평균 보상 결정률이 89%임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예상 보상인원 (4,542명)에 비해 실제 보상은 4,262명에 그칠 전망이며, 6·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'한국유격군총연합회' 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, 현행법상 공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함.

이에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, 한국유 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 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(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). 법률 제 호

6 · 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2년"을 "6개월"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8조(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) ① 공로자 및 그 유족은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유격군총연합회 등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,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개 정 아 햀 제7조(공로금의 지급신청) ① (생 제7조(공로금의 지급신청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 ② -----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제18조(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 제18조(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 원) 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 원) ① 공로자 및 그 유족은 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하 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기 위하여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지원할 수 있다. 를 설립할 수 있다.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한국 유격군총연합회 등 공로자 또 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 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유격군총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, 이 법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